##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2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 김철민ㆍ이원욱ㆍ이정문

민형배 • 이해식 • 강선우

김민철 · 한병도 · 이용선

안호영 · 권칠승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상이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참여 학생, 실습기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열정페이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의 40%는 실습 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 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19조 및 제20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 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대하여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 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2. 현장실습생 선발, 실습시간,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교육기관에서 현장실 습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실습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5 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경비"를 "경비(제1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비"를 "경비(제1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
	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
	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
	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
	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대
	하여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
	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
	<u> 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야 한다.</u>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
	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생 선발, 실습시간,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비
	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제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 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실습 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 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 여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 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조(	실험 •	실습시	]설	운영	비의
부담	등) (	D			
	- <u>경</u> 브	비(제11	조의:	3제2형	항제3
호에	따른	현장실	실습	지원	비를
포함형	한다)				

②·③ (생 략)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 등의 보조) ① -----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 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 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 ·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경비(제11조의3제2 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 비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